구분 정의 세정지원 검토 기관 기술･비용 검토 기술분류 신성장･원천기술 연구개발비 조특령[별표7]에서 규정한 기술에 대한 연구개발비 ⦁당기에 지출한 신성장･원천 기술 연구개발비의 최대 40% 세액공제 국세청 한국산업 기술 국가전략기술 진흥원 연구개발비 조특령[별표7의2]에서 규정한 기술에 대한 연구개발비 ⦁당기에 지출한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비의 최대 50% 세액 공제 일반 연구･인력 개발비 위 연구개발비에 해당하지 않는 연구･인력개발비 ⦁①당기 지출 연구･인력개발비의 최대 25% ⦁② 전년 대비 증가한 연구･ 인력개발비의 최대 50% → ①,② 중 선택하여 적용 -